

■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6년 9월 7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31조 <생략> 제32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33조~제35조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제4조 <생략> [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제31조 <좌동> 제32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좌동> ② <좌동>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3조~제35조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제4조 <좌동> [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반영 개정일 명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제1조~제3조 <생략>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7조제3항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에·적금 3.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4. 발행어음 5. 환매조건부채권(RP) 6. 이율보증형보험(GIC) 7.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8. 집합투자증권(채권형) 9.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10.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11. 집합투자증권(주식형) 12.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3.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4.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5.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 16. 제8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12호 내지 제13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7.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조~제3조 <좌동>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7조제3항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1. MMF 2. 정기에·적금(시중은행) 3. 정기에·적금(저축은행) 4.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5. 발행어음 6. 환매조건부채권(RP) 7. 이율보증형보험(GIC) 8. 파생결합사채(ELB/DLB) 원리금보장형 9. 집합투자증권(채권형) 10.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11.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12. 집합투자증권(주식형) 13.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4. 집합투자증권으로만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15.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16. 파생결합사채(ELB/DLB) 원금보존추구형 17. 제9호 내지 제12호 또는 제13호 내지 제14호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동일 유형상품 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18.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기예금 상품 분류 세분화 및 번호 순서 변경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② <생략> [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생략>	② <좌동> [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좌동>	

■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개정시행일 : 2026년 9월 7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제33조 <생략>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은행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은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u><신설></u>	제1조~제33조 <좌동>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좌동> ② <좌동> <u>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u> 제35조~제36조 <좌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반영
제35조~제36조 <생략> 부 칙	제35조~제36조 <좌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4년 4월 1일</u>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u>단, 2024년 4월 1일 개정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수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u>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u>2026년 9월 7일</u>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u>(삭제)</u>	개정사항 적용시기 명시

[별지1]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생략> 제1조 <생략>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생략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신탁재산평가액에 연 <u>0.28%</u>를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신청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직전 계산기준일부터 전환신청일 전일까지의 자산관리수수료를 전환신청일에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3의2. <생략>	[별지1]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좌동>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① <좌동>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신탁재산평가액에 연 <u>0.24%</u>를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신청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직전 계산기준일부터 전환신청일 전일까지의 자산관리수수료를 전환신청일에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3의2. <좌동>	표준형DC 자산관리 수수료 인하
---	--	-------------------------------